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 요청사항(위탁 사무)

가. 센터운영 전반

- 센터 인력 구성·운영
- 시설·장비 운영·관리
- 식재료 물류·배송의 효율적 관리
- 공공급식 관련 정책 지원업무 수행

나. 관할 공공급식 시설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 산지에서 공공급식시설에 이르는 물류 및 배송 체계 관리
- 공공급식 식재료 집하·검수 및 시설별 배송
 - 지역생산 식재료 전일 야간 집하·검수, 전처리·소분, 당일 새벽 배송
- 수발주시스템 운영(주문내역 및 배송 확인 등)
- 식재료의 검수 및 검품, 결품, 미 phẩm 등 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
- 결품 처리 및 대체 식재료 구매·배송 등 식재료 조달 및 민원 처리
 - 수탁자는 산지 공급 불능 품목에 대한 대체 식재료를 우리 구와 협의하여 적정 가격을 산정한 후, 보완 공급해야 함. 단, 수탁자가 자체 납품하는 품목 등을 센터에 납품할 수 없음

- 공공급식 관련 계약업무(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 관련) 등

다. 식재료의 품목·물량·품질·위생·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급식 시설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 수요 관리
- 식재료의 품목 및 물량에 관한 안정적 공급 관리
- 식재료의 품질 기준 관리
- 식재료의 위생 관리, 안전성 검사 의뢰(서울시) 등

라.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산지 지자체·생산자조직과 협력체계 구축

마.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바.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등

2. 시설 개요

- 가. 명 칭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 나.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40(외발산동)
- 다. 규 모 : 사무실($60m^2$), 물류창고($189m^2$) 등
- 라. 공간구성 : 운영사무실, 입출하장·피킹장·위생전실 등(공용사용)

3. 사업예산 : 365,316천원(2018년)

(단위:천원)

년도	사업비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비고
2018년	365,316	민간 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365,31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 사무 3명(센터장 포함), 배송 3명 - 기타 임대료, 안전성 검사비, 관리비 등 포함 	6개월 기준 (7~12월)

※ 사업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그리고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인력 및 배송인력은 수탁자 선정이후 우리 구와 협의를 통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4. 위탁기간 : 3년

5. 응모자격

- 가. 공모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제한 없음
- 2~3개 이상 법인이 혼소시업을 구성하여 응모 가능(단, 각각의 법인은 응모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 참가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됨)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정의) 참조
- 나. 참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위탁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타법인(단체) 명의로 수탁을 받으려 하거나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만 참가가능

6.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18. 5. 15. ~ 6. 4.
- 사업신청서 접수 : 2018. 5. 29. ~ 6. 4.(9:00~18:00, 휴무일 제외)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6. 8. ~ 6. 19. 중 1일
※심의일 확정되면 신청기관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7. 6월중

7. 사업 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

- 2018. 5. 29.(화) ~ 6. 4.(월) (시간 : 09:00 ~ 18:00, 휴무일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제4별관 3층 교육지원과
※구청제4별관 : 홍은2동주민센터 건물
- 문의 : 김동기 주무관(330-8190)

라.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증서류 각 1부 ※ 등기부등본 최근 20일 이내 발급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대표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최근 20일 이내 발급
-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단체)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시) 각 1부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 분야평가 자가진단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신인도 확인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별도제출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협력 또는 후원 등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증빙 자료 등
 -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법인 관련 서류는 각각의 법인 관련 서류 다 제출되어야하며, 대표자 서명·날인 부분 역시 각각의 법인 대표의 서명·날인 있어야 함
또한, 컨소시엄 관련 법인간 협약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업무총괄 법인, 지분비율 및 사업계획, 각각 법인의 과업수행 내용,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컨소시엄 관련 협약서 별도 서식없음)

마. 제출수량(제안서 및 발표자료)

- 총10부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단면인쇄
 - 제본방법 : 좌철(좌로 넘기기)
- 전자파일(USB) 1부

8.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심의일시 : 2018. 6. 8. ~ 6. 19. 중 1일

※ 신청자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 예정

나. 선정방법

-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실시
- 평가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각 심의위원 평점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시
- 평가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고용안정 및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우선으로 하며, 그 또한 동점인 경우 심의위원 합의로 결정

다.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주사무소 서대문구 소재여부, 신인도, 사업수행 실적 등
- 정성적 평가(80점) :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사회적 기여도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재

라. 결과발표 : 심의일 이후 5일이내

※ 심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문자메세지로 신청기관에 결과발표 안내 예정)

※ 협상포기, 부적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협의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9.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받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

- 라. 센터 운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우리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이행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바.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수탁체로 선정되었을 시,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단체)를 설립하여야 함.
- 사. 사업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매달 또는 분기별 등) 정산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부수 수입을 반납하여야 함
- 아. 수탁자가 자체 납품하는 품목 등은 센터에 납품할 수 없음
- 자.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인력 및 배송인력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후 우리 구와 협의를 통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에게 있음
- 다.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됨
- 라.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마. 기재내용의 허위사실 등 부적격 수탁기관임이 인정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